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(법률 제7662호 전면개정 2005. 08. 04.)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개정 된 상위법의 법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띄어쓰기

-「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를「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로 함

나.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상위법 개정 조항을 반영함(안 제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지방재정법」제33조(발췌 별첨)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1)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「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”를 “「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6조의2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5항 및 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 명 「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	**제 명** 「성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**「지방재정법」 제16조의2의**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----------**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** ----------.